

보험가입대상 제조업자의 검사시설 및 기술인력 보유기준

(제31조의13제1항제4호나목 관련)

구 분	보유대수 및 인원
<p>1. 검사시설</p> <p>가. 만능재료시험기</p> <p>나. 수압시험기</p> <p>다. 수질분석설비</p> <p>라. 가스분석기</p> <p>마. 치수측정기</p> <p>바. 표면온도계</p> <p>사. 초음파두께측정기</p> <p>아. CO/CO₂측정기</p> <p>자. 가스누설검사기</p> <p>차. 기밀시험설비</p> <p>카. 연소효율측정기</p> <p>타. 안전밸브시험기</p>	<p>용량10톤 이상의 것 1대 이상</p> <p>2MPa 이상의 것 3대 이상</p> <p>산도·경도·염산이온 및 인산이온의 분석이 가능한 것 1대 이상</p> <p>3성분(CO,CO₂,O₂) 이상 분석가능한 것 1대 이상</p> <p>버니어캘리퍼스(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) 및 마이크로미터 1식 이상</p> <p>1대 이상</p> <p>1대 이상</p> <p>1대 이상</p> <p>1대 이상</p> <p>1대 이상</p> <p>1대 이상</p> <p>1대 이상</p> <p>1대 이상</p>
<p>2. 기술인력</p> <p>가. 4년제 대학에서 이공계학과를 졸업한 자(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)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,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·기계분야 기사·에너지관리기능장 또는 기계분야 기능장</p> <p>나. 고등학교졸업자(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)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계분야 기능사 또는 에너지관리기능</p>	<p>2명 이상</p> <p>3명 이상</p>

사 다. 안전관리분야 가스기능사 라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전 기·가스 또는 특수용접기능사	1명 이상 3명 이상
---	----------------